

학부모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

학부모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

학부모

교육활동 침해 예비상 교육자료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교육을 만듭니다.
교사가 흔들리면 학생도 흔들립니다.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는 양질의 교육을 만들고,
양질의 교육은 건강한 인재를 만듭니다.



contents

04 일러두기

제1부

0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제2부

10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제3부

20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

제4부

26 학부모와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

본 교육자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따라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다.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라.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부모의 교육권을 위임받아 국가의 교육정책과 학생의 발달 수준, 다양한 교과와 연계된 바탕으로 전인적인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하여 공동체 생활을 추구하고 있으며, 협력과 배려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은 수업을 통해 교과와 지식과 기능, 가치-태도를 함양하고, 생활지도를 통해 바른 인성을 함양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과 및 공동체 활동들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에서의 교육과 차별화된 학교교육만의 특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정교육의 중요성이나 의미를 부정하지는 않으며,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보호자와 교사의 마음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원은 학교 교육의 주체로서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을 위해 보호자와 함께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이런 교육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에 마주치기도 합니다.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교원과 학생, 보호자 간에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오해가 생기거나 서로 대립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본 교육자료를 통해 이런 오해와 대립을 해소하고 교사와 보호자가 함께 교육하는 공동체를 학교를 통해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제1부에서는 본 교육 자료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제2부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제시하였습니다. 법률

용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제3부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침해 학생과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사안 처리의 절차를 제시하여 학부모님들이 본 법령에 대한 상황을 투명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부에서는 학부모와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의 교육환경에 대한 이해, 학부모의 정당한 교육활동 참여,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등을 통해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교육 자료를 통하여 학교교육의 전문가인 교원, 그리고 가정교육의 전문가인 학부모님의 지혜로운 만남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행복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발현되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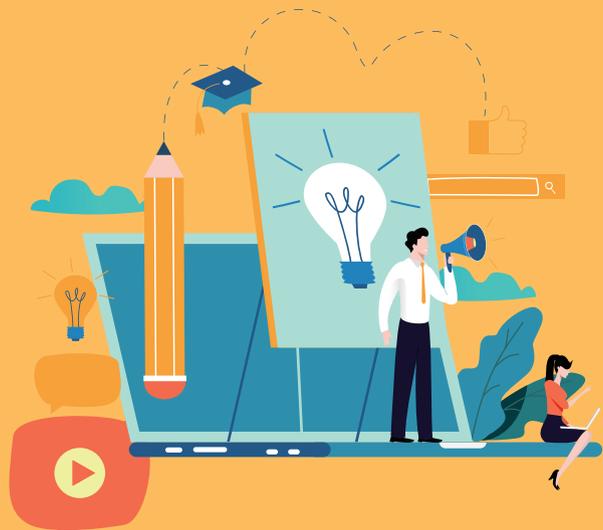


교육활동 침해 예비양 교육자료



제1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는 매년 2,5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주를 이뤘으나,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도 2013년 69건에서 2018년 21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0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의 변천 과정

교원의 교육활동은 교원지위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관련 규정이 교원지위법에 제정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현행 교원지위법의 교육활동 보호 규정은 대응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률

舊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2016. 2. 3. 법률 제13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규정 부존재

대통령령

舊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도 교육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의무, 시·도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등이 규정됨.

舊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13936호, 2016. 2. 3. 공포, 8.4. 시행)

- 교육활동 중에 폭행이나 모욕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하여 적절한 치유와 교권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침해학생에게는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게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제명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함.

舊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18호, 2016. 8. 2. 공포, 8.4. 시행)

-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구체적 유형 및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제명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함.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16309호, 2019. 10. 17. 시행)

- 침해학생에 대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 퇴학 등을 포함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교육 또는 심리 치료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응조치를 강화함.
-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특별휴가, 심리 상담 및 조연 등 보호조치의 근거를 강화함.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19호, 2019. 10. 17. 시행)

-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범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왜 교원지위법은 ‘교권 보호·침해’ 대신 ‘교육활동 보호·침해’라고 할까요?

교권은 권익주체인 교원에게는 능동적인 개념이지만, 학생 및 학부모에게는 피동적인 개념입니다. 일부에서는 교권을 학생·학부모의 권익과 상충되는 개념으로 여기고, 교권남용을 이유로 교권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에 대한 침해행위는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 큰 피해를 줍니다. 수업 등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이 보호받지 못하면서 학생들의 교육활동 또한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특정 위법행위를 직접 규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교원지위법은 ‘교권 침해’ 대신 ‘교육활동 침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보호 측면에서 교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은 모든 교육주체가 향유하는 공통의 이익이므로, 교육활동을 보호함에 있어서 교육주체 간 이견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원 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이 교육활동 보호에 있다면, 학생과 학부모 또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



제2부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0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는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입니다. 실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대부분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일어납니다. 그러나 법은 침해행위자를 학생 또는 그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활동 보호 규정은 주로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외의 자, 즉, 학교관리자, 교육행정기관, 동료교원, 지역주민, 언론 등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02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객체

교육활동 중인 교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규정은 교원의 신분 자체를 보호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교육활동과 무관하게 이뤄진 교원에 대한 위법행위에는 교원지위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03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교육부고시 제2019-203호) 제2조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04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

폭행·상해(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1) 개념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고, 상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행력을 행사하며 신체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신체의 안전성을 해치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교원의 신체를 밀치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잡아서 흔드는 경우
- 큰소리로 폭언을 하여 피해교원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하고, 우울병 등으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한 경우

Q. 수업 중 학부모가 찾아와 저에게 폭언을 하며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지팡이에 맞지는 않았는데 이후 저는 수업을 할 때도 너무나 두려워 수업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폭행죄에 해당할까요?

A.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행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대판 89도1406; 대판 2000도5716)

- 위 이야기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례 유형으로 각색하여 구성하였습니다.

☑ 협박(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1) 개념**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하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뜻하며,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피해가 예측되어야 합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위험한 물건을 교원의 목에 겨누면서 찌를 것처럼 위협한 경우
- 피해교원에게 학교폭력을 은폐한 사실을 기자와 교육청에 말하겠다고 위협한 경우

Q. 아무런 말없이 행동으로 저를 위협하였으면 협박인가요?

A.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피해가 예측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해악을 고지할 수 있기에 협박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대판 74도2727; 대판 2010도14316)

☑ 모욕·명예훼손(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1) 개념**

모욕은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말하고, 명예훼손은 공연히 특정 사람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구체적 진실을 전달하더라도 그것이 상대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특정교원의 외모를 지칭하며 경멸적으로 말하는 경우
- 다른 학부모들에게 '담임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이야기 하는 경우

Q. 교사에게 전화로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나요?

A. 전화 통화 중 욕설은 일대일 대화 중이므로 모욕죄의 공연성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형법상 모욕죄로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전화라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을 비방하는 정보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한 명에게만 이야기 했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나요?

A.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한 1인이라도 그 말을 들은 상대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성립합니다.(대판 96도1007) 즉,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타인에게 해당 사안에 대하여 말을 옮기거나 대화 내용을 저장하여 온라인상에 올릴 경우 공연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손괴(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1) 개념

다른 사람의 재물, 문서, 기록 등을 부수거나, 숨기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이물질을 담임교사 차량의 에어컨 배기구에 부어 손상을 입힌 경우
- 담임교체를 요구하며 교실에 있는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 경우

Q. 국·공립학교 공용물을 파손한 경우에도 손괴죄가 적용되나요?

A. 국·공립학교의 공용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 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성범죄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2호)

1) 개념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음화제조 및 반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행위 등을 통하여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성적인 접촉을 강요하여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학부모가 담임교사와 상담 시 허리, 종아리, 허벅지 등 일반인의 시각에서 접촉이 꺼려지는 부위를 고의로 접촉하는 경우
-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교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

Q. 학부모님이 휴대 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제 얼굴을 동의 없이 수 회 촬영하였고, 이것을 휴대전화 메시저로 다른 학부모에게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적 수치심이 드는데 이것은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나요?

A. 형법 제 243조 소정의 '음란'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고,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의 풍속, 윤리, 종교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추상적인 것이므로 결국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정서를 그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해당 경우처럼 얼굴은 성적인 음란함을 유발하는 부위라고 인식되기 힘듭니다. (대판 94도 2266)

- 위 이야기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례 유형으로 각색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3호)

1) 개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① 비방할 목적으로 다수에게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이야기 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판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 ②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보내는 행위, ③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 역시 구체적 진실을 전달하더라도 그것이 상대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실적시 명예 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폭행, 학대하고, 이를 따지는 학부모에게 욕설과 협박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교사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게시한 경우
- 담임교사에게 불만을 품고, 새벽시간을 포함한 수 일 동안 “죄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교사의) 자손들이 장래 불행할 것이다”라는 등의 저주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수 십여 차례 보내 교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경우

Q. 얼마 전 한 학부모가 유치원에 찾아와 ‘아이가 여기 다니면서 아토피가 생긴 것 같다’라며 거액의 피부 치료비를 요구하셨고 저희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 학부모가 인터넷 게시판에 누구라도 유추가 가능할 정도로 저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와 함께 ‘이 유치원에 다니면 아토피가 생긴다’라는 등의 악의적인 평가와 댓글을 계속 달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비방의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정보 유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위 이야기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례 유형으로 각색하여 구성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 업무방해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4호,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1) 개념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하게 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협박, 혹은 위계로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혹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방해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무 중인 교원에 대해 폭행·협박행위를 하는 경우, 직무/업무라는 법익 또한 침해되었으므로 교육공무원인 교원인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학생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 학생을 혼내준다면, 수업 중인 교실로 들어가 관련학생들을 교실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하고, 이를 만류하는 교사를 협박하여 수업 진행을 방해한 경우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4조,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1) 개념

성적 언동(말과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학교에서 자녀 상담을 하던 학부모가 성적인 비유와 농담을 반복적으로 하여 담임교사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Q. 가해자가 성희롱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도 성희롱이 성립되나요?

A. 성희롱은 가해자의 의도나 동기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해자가 성희롱의 의도로 한 언동이 아니라 할지라도 문제의 언동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Q. 동성간에도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나요?

A. 동성간에도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만한 객관적인 행위가 있고, 피해교원이 성적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성립합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4조,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1) 개념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체육교사에게 '수업시간에 야외 체육활동을 하지 말고 자습을 시키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시험 평가에 관하여 교사에게 '시험범위를 줄이라', '시험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내냐? 쉽게 내라'라며 반복적으로 요구·간섭하는 경우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1) 개념

교원지위법 및 교육부장관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유형일지라도 학교장이 교권존중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다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교사를 무시하며 학생들에게 교사의 말을 듣지 말라고 종용하는 경우

Q. 다리가 부러져 휠체어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부모님의 요구가 이상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을 못 믿겠으니 오후 6시까지 제가 직접 교실에 데리고 있다가 제가 직접 그 학생의 집까지 데려다 줬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오후 5시면 학교 문이 다 잠기는데, 오후 6시까지 학교에 두는 것은 안전사고의 위험으로 인해 안 된다고 말씀 드렸는데도 학부모님은 '선생님만 믿겠다.',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인데 이것도 안 해주냐'라고만 하십니다. 교장선생님과 상의하니 원만히 거절을 드리라고 하여 학부모님께 다시 말씀드렸는데도 이제는 전화를 받지도 않으십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교사에게 과도한 의무를 요구하는 경우,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위 이야기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례 유형으로 각색하여 구성하였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



제3부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



01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 조치 규정 신설

법률 개정으로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근거를 교원지위법에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아닌 교원지위법에 의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교원지위법 개정 (시행일 2019.10.17.)이전	교원지위법 개정 (시행일 2019.10.17.)이후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교원지위법」 제17조
가능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학교 내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특별교육 이수 ④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⑤ 퇴학처분(퇴학 처분은 의무교육 대상자¹⁾에는 적용 안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학교에서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④ 출석정지 ⑤ 학급교체 ⑥ 전학 ⑦ 퇴학처분(퇴학 처분은 의무교육 대상자에는 적용 안 됨)

☑ 신설 규정의 특징

학급교체와 전학 조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정지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상 조치와 달리 출석정지 기간에 제한(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을 받지 않습니다.²⁾ 그렇다고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기간의 출석정지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침해 정도에 비례하는 적절한 기간으로 부과하여야 징계양정에 있어서 위법이 없습니다.

전학 조치를 받은 침해학생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필요적 병과), 전학 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임의적 병과). 단,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에게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병과하지 않습니다.

1)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2) 헌법재판소 2019. 4. 11자 2017헌바140 결정 참조

☑ 조치 결정 시 세부기준(교원지위법 시행령 참조)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침해행위의 ① 심각성, ② 지속성, ③ 고의성, ④ 침해학생의 반성정도 및 선도가능성, ⑤ 피해 교원과의 관계회복 정도, ⑥ 피해교원의 임신·장애 여부나 정도, ⑦ 침해학생의 장애 여부나 정도를 고려하여, 교원 지위법 17조에 의거하여 조치를 결정합니다.

이 중 전학 및 퇴학 조치는 학생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남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2회 이상 개최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학 및 퇴학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교원에게 상해·폭행을 가한 경우와 성폭력범죄 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초 발생의 경우에도 전학 및 퇴학 조치가 가능합니다.

02

학생 외 침해자에 대한 조치

☑ 형사 고소·고발

학부모를 비롯한 학생 외 침해자에 대하여는 학교의 장에게 징계권한이 없으므로 형사처벌 법규에 위반하는 심각한 침해행위에 한하여 형사고소·고발로서 대응합니다. 이때, 피해교사가 원하면 관할청이라는 기관 차원에서 형사고발이 이뤄지게 됩니다.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통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 외 침해자의 행위를 심의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를 밝히고, 그 결과를 각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침해행위가 이후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침해행위자와 피해교원이 희망할 경우 분쟁조정 절차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 과태료 부과

교원지위법 제18조에 따르면, 침해학생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된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로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은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03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안처리 절차



04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흐름도

절차	세부 사항
분쟁조정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 중 한 쪽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 해당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분쟁조정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분쟁조정 시작 -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통보 - 당사자 중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분쟁조정의 연기 요청 가능.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쟁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 가능 -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쟁조정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 당사자 의견 및 요청사항 청취 - 중재 노력 - 분쟁조정 성립 시, 합의서 작성
종료 및 결과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조정 성립 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작성한 합의서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 *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성립하지 않는 경우 종료 가능 • (분쟁조정 불성립 시) 시·도 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가능

Q. 분쟁조정을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아닌, 시·도 교권보호위원회에 공장 신청할 수 있나요?

A. 교원지위법 제 19조에 의하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시·도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된 학교에서 발생한 분쟁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



제4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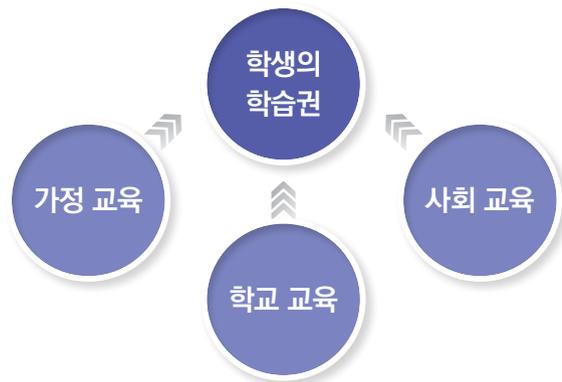
학부모와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01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원의 교육에 대한 사기와 열의를 떨어뜨리고, 학생들에게 쏟아야 할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합니다. 따라서 선량한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보장과 상호신뢰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인성에 위협

민주시민의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 교원이 보호받지 못하는 모습은 교육환경을 회복하기 힘든 상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학년 학생일 경우 교원은 학교에서 부모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학부모와 교원 간의 분쟁은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

수업활동과 안전을 위한 준비 시간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학생은 교육활동 중에 보호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으며, 이는 교원과 학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2 학교의 교육 환경 이해하기

☑ 학교의 업무 상황



교육

교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성적에 대한 민원제기가 많고, 수업-평가-기록이 일원화되어 업무부담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성 개발

교사들은 학기중뿐만 아니라, 방학 중에도 각종 연수(직무, 자격, 자율연수 등)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학교행사

학교에는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입학식, 졸업식, 수확여행, 학술제, 학생교류, 대피훈련 등 학교 상황에 맞는 다양한 활동이 많고,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등)과 협조하고 있습니다.



교무행정

학생의 학습권을 위해 수업준비에 여념이 없어야 하지만, 각종 행정업무로 인해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사들은 이외에도 급식, 안전, 보건, 상담, 생활지도, 각종 보고 등으로 하루 종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 업무 영역의 확대

- 교사중심의 업무환경에서 학생중심의 교육환경으로 변모하였습니다.
- 다문화 학생의 증가로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교육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시대의 변화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해야합니다.
- 학생들의 정신과 육체 건강을 위해 급식, 영양, 상담 등의 업무가 중요해졌습니다.
- 환경오염에 따른 미세먼지 증가, 각종 전염병 등으로 학생 보건교육이 절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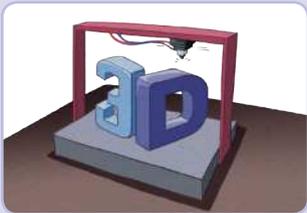
드론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빅데이터를 통한 정보처리



3D프린터



교사는 시대의 변화를 읽고 새로운 교육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교사는 티칭의 주도자가 아니라 코칭을 통하여 학생의 자기주도성을 조력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삶의 모범이 될 만한 인성은 필수적입니다.



토론 및 거꾸로 수업



AI(인공지능)



원격강의



각종 안전교육



급식 및 영양교육



다문화 교육

☑ 학생 특성 이해 및 생활지도 업무의 어려움



타인 배려 부족



폭력적인 학생들



사이버 폭력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으로 개별적인 교육은 쉽지 않고, 부족한 타인배려와 폭력적인 환경에서 학생의 비행은 점점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교사의 역할은 여러 이유로 막혀 있어 어렵습니다.



생활지도 거부



분노조절장애



입시교육



사회성 부족



학업중단 학생 증가



자해 증가

03

교원의 교육활동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

☑ 학교 안전사고 처리 과정

학교 교육에서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학생의 안전입니다. 체육시간, 과학시간, 청소시간, 식사시간, 체험활동 시간 등에서 주로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교원은 학생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교육활동을 계획하나, 학생의 경험을 중요시하는 학부모 또는 안전사고의 책임을 언급하며 해당 활동의 중단을 요구하는 학부모와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이럴때는 이렇게!

자녀가 안전사고가 난 경우

Q. 제 자녀가 학교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치료절차 및 출결, 그리고 보상 관계에 대하여 담임 선생님께서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A. 학생들은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학부모님께서도 자녀가 다쳐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시다가 목소리가 커져 선생님과 갈등이 시작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질문을 할 때에는 먼저 아이에게 연락을 받은 즉시 하시는 것 보다, 좀 진정을 하신 뒤에 연락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업무시간 중에 학교 대표전화를 통하여 전화로 상담을 하시거나, 방문 약속을 하고 기일을 지정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치원 및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지역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항목 부분 및 "공제급여지급기준"의 규정에 의한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학교와 상의하셔서 안내받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 위 이야기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례 유형으로 각색하여 구성하였습니다.

☑ 학교폭력 처리 과정

학교폭력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진행되고 심의를 통해 결과가 판단되기 때문에 사안별로 항상 동일한 진행과 결과가 만들어지기 힘듭니다. 학교폭력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으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민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럴때는 이렇게!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된 경우

Q. 제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는 학교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반에 대한 문의와 저희 자녀도 피해사실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해 담임 선생님 혹은 학교폭력업무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A. 학교에서 단체생활을 하다보면 학교 친구들끼리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학교폭력 예방법상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은 학교폭력으로 무조건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간의 다툼과 폭력 사건에 대하여 학교폭력전담기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하여 사안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그렇기에 학교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보호자의견서 및 자녀분의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셔서 사안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그리고 피해학생 학부모님과의 원만한 화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위 이야기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례 유형으로 각색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성적 평가 과정

평가 업무는 기본적으로 교원의 고유한 업무 영역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점수 상향 등 무리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가 입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 수정을 요구하는 과정이 다소 무리하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럴때는 이렇게!

성적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경우

Q. 제 자녀가 작년과 다르게 성적이 무척 낮게 나왔습니다. 성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A. 기대치보다 낮은 성적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는 기본적으로 담임 선생님 혹은 교과 선생님의 고유한 업무영역이며, 또한 담임 선생님 혹은 교과 선생님은 학생들의 성적을 평가할때 상당한 고민을 거듭합니다.

이에 대하여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성적에 대한 안내와 동시에 정정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일 학부모님께서 직접 자녀의 성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신 경우, 학교의 안내를 받아 공식적인 성적 이의 신청 기간 동안 이의 신청을 하신 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의견을 말씀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 위 이야기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례 유형으로 각색하여 구성하였습니다.

☑ 학부모 민원 제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학부모 민원은 학부모회의, 학교운영위원회, 담임교사 상담 신청 등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제기해야 합니다. 교원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때는 이렇게!

학교와 생활지도로 인해 갈등이 생긴 경우

Q. 제 자녀의 두발상태에 대하여 학교에서 지적을 받아 자녀 생활지도에 관련하여 학교와 상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A.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님의 교육권, 그리고 교사의 교육권은 함께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활동을 보호한다는 의미는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님의 교육권이 보장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이 보호될 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님은 교원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권리와 교육방법을 결정할 권리, 그리고 학생을 지도하고 징계, 평가할 권리를 존중하며, 자녀의 학교생활에 의문이 생겼다면 선생님에게 먼저 상황을 자세히 물어보아야 합니다. 학부모님의 모든 문의나 의견 제시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담임 교사와의 상담을 추천 드립니다. 상담 시에는 자녀의 두발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혹시 다른 이유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위 이야기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례 유형으로 각색하여 구성하였습니다.

04 학부모의 정당한 교육활동 참여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

-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 방법

1) 학교알리미 활용

2008년부터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를 기반으로 교육부에서 정한 공시 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학교의 현황을 학교알리미에 공시하고 있으며, 학생·교원현황·시설·학교폭력발생현황·위생·교육여건·재정상황·급식 상황·학업성취 등과 같은 학교의 주요 정보들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학교알리미를 활용하면 학교에 대한 기본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얻어 학교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학교운영위원회 활용

[초·중등교육법 제4장제2절(학교운영위원회) 참조]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현황 및 규정의 개정,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 및 부교재의 선정, 정규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중 학생의 교육활동,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극기훈련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학교운영지원비, 교육회계 등의 예산 및 결산, 교원(교장·교사)을 초빙하는 경우 그 추천 대상자의 선정,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등의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 밖에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국·공립학교에는 반드시 설치하여 운영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립학교는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공립학교의 경우 심의기능을,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문기능을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학교 운영을 위해 논의하는 법적 기구입니다. 학교 운영에 관심이 있다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거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심의 사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학부모회 참여³⁾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5.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 학부모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학부모회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가진 학부모의 의견을 모아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기구로서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 교육의 방향과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교육청 및 학교 상황별로 다를 수 있음.

4) 학부모 총회 및 각종 연수 참여

학부모 총회는 매년 초에 개최되며, 학교의 일반적인 방향 안내, 각종 구성원 선출(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위원 등),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실시 등이 이루어집니다. 학부모 총회에서는 학년 및 담임교사 차원에서 학생 교육 방향과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며, 학교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학생의 특성 등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아동학대 예방, 학교폭력 예방,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등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공개수업 참여

공개수업에 참여함으로써 교원의 수업활동, 학생의 참여 등을 관찰하여 학생들이 수업하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공개수업을 통해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학생의 학교생활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의 정당한 민원 제기 방법

학부모가 학교를 충분히 이해하더라도 학생의 안전, 성적, 건강, 교우관계,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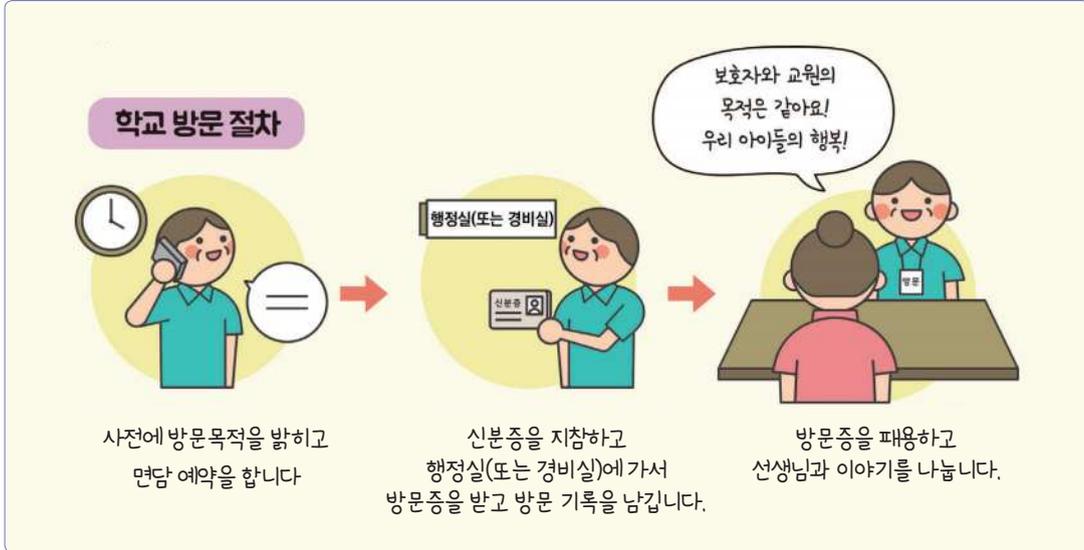
1) 민원 제기 대상

- 학급의 문제는 담임교사에게, 교과 문제는 교과담임에게, 업무 문제는 담당 업무 교원에게 먼저 문제를 설명합니다.
- 담임교사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해를 구하고 관리자(교장, 교감)와 상담을 합니다.
- 민원을 제기할 경우 다른 교원, 다른 학교 등과 비교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2) 학생 학습권 최우선 고려

민원제기 전 학생의 학습권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 교원의 수업 및 학생지도, 임장 등을 우선시 하고, 학부모의 민원제기로 인해 수업 중인 교사와 학생의 교육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학교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약속을 잡고 방문을 합니다.
- 민원 처리에 일정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인식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학부모의 요청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본인의 자녀만을 위한 요청이 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05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가정교육의 중요성 인식하기

가정교육은 학교교육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가정교육이 튼튼하지 못하면 학교교육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학교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성교육이나 생활습관 개선, 관계성 교육 등은 가정교육을 통해 내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원과 학부모의 관계 재정립하기

교원과 학부모 간의 신뢰와 존중은 학생 보호와 교육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입니다. 학부모와 학생이 교원과 학교를 신뢰할수록 학생의 학습권은 보장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이 가능합니다.

- 교원과 학부모는 자녀(학생)를 키우는 새로운 부부와 같습니다. 한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협력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 학교 교육의 미래는 교원과 학부모의 역할의 연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모가 해야 하는 예절교육은 가정에서 하고, 교원은 집단행동 속에서 아이들이 최소한의 규범을 준수할 있도록 학교에서 교육한다면, 서로 의견일치를 보이는 것입니다.
-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모두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녀(학생)를 보호하고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함께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Ⅰ 부록 Ⅰ 자녀에게 존경 받는 부모 되기

부모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자식을 **자랑거리**로 만들고자 함이다.

부모의 가장 큰 지혜는
자신의 삶이 자식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다.⁴⁾

1) 말의 힘

(1) 존 가트만 박사가 말하는 대화의 종류⁵⁾

- 가. 원수가 되는 대화
- 나. 멀어지는 대화
- 다. 다가가는 대화

🔍 학부모님은 어떤 대화를 사용하나요?

(2) 부부의 대화⁶⁾

부부 관계를 망치는 대화	부부 관계를 좋아지게 하는 대화
비난 (그것도 모르냐? 답답한 사람이네!)	요청 : 비난 대신 정중하게 요청하고, 들어주면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경멸 : 깔보는 말 (정말 한심하네? 할 줄 아는게 뭐가 있냐?)	인정 (그 일은 내가 잘못했어!)
방어 : 말을 함부로 뱉고 맞받아 침 (저녁 차려줬음 설거지라도 해!)	존중 (나도 당신처럼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됐었겠다.)
도피 : 부딪히지 않게 그 상황에서 몸을 피하여 담을 쌓게 됨 (대화하기 싫어서 방으로 들어가거나 나가버림)	대화 : 목소리가 너무 높은 톤이나 짜증스런 목소리는 대화는 상대하기 싫어질 수 있으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합니다.

4) 이유남(2017). 엄마 반성문: 전교 일등 남매 고교 자퇴 후 코칭 전문가가 된 교장선생님의 고백. 멘스토리.

5) 이유남(2017). 엄마 반성문: 전교 일등 남매 고교 자퇴 후 코칭 전문가가 된 교장선생님의 고백. 멘스토리

6) 최성애(2010). 최성애 박사의 행복수업. 해냄출판사

최성애(2014). 나와 우리아이를 살리는 회복탄력성. 해냄출판사

(3) 듣고 싶은 말

	자녀가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말	부모님이 자녀에게 듣고 싶은 말	교사가 학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말
1	기다릴게. 걱정마		
2	아들, 딸 고생했어		
3	아들, 딸 괜찮아		
4	우리 아들, 딸 최고야		
5	함께 놀러 가자.		
6	많이 힘들었지?		
7	너가 하고 싶은 거 해.		
8	못해도 괜찮아		
9	잘 할수 있어 그리고 잘하고 있어.		
10	우리 집에 가장 귀한 보물		
11	너를 믿어		
12	니가 내 자식이라서 감사해		
13	좀 더 쉬어		
14	미안해		
15	보고 싶다		
16	이쁘다		
17	네 의견을 존중해 줄게		
18	힘내라		
19	넌 열심히 했어		
20	고마워		
21	널 응원한다		
22	오늘 뭐 하고 싶어?		
23	네가 자랑스러워		
24	사랑해		

2)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⁷⁾

영국의 교육심리학자 허츠의
"존경받는 부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라고 합니다.

첫째, 자녀 앞에서 싸우지 않는 부모
둘째, 자녀들에게 거짓말 하지 않는 부모

셋째, 자녀의 질문에 올바르게 대답하는 부모
넷째, 자녀를 편애하지 않는 부모

다섯째, 자녀 앞에서 행복하게 보이는 부모
여섯째, 자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는 부모

일곱째, 자녀들의 친구까지 사랑하는 부모
여덟째, 자녀를 타인 앞에서 존중해 주는 부모

아홉째,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정확하게 책망하는 부모
열번째, 일관성 있는 말과 행동을 보여주는 부모

열한번째, 자녀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된 것을 아는 부모

존경받는 부모되기,
쉽게 보이는 원칙 같지만 결코 쉽지않은 않습니다.
나는 어떤 부모일까요?

-유병훈의 아침교육편지에서.

7) <http://blog.daum.net/chajchul/2369985> 참조



학생의 행복이 교사의 행복입니다
부모의 마음 교사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지지하여 주십시오!

학부모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 개발진

성명	소속	직급
고영규	충주교현초등학교	교사
김지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상담사
이안정	진산중학교	교사
임지백	인천원당초등학교	교사
왕건환	경기도등학교	교사
조기성	인천하늘고등학교	교사
자산	울산광역시교육청	변호사
한진우	내성초등학교	교사

연구자료	CRM 2020-02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학부모
발행일	2020년 1월
발행인	원장 반상진
발행처	한국교육개발원 (27873)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7
기획·편집	디자인팀킨
인쇄처	예송미디어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학부모

교육활동 참여
예비 교육자료